산림청 공고 제2019-58호
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11일

산림청장

2019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

1. 지원 계획

○ 지원사업

- 해외산림자원개발 :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, 바이오에너지조림, 임산물가공시설, 해외조림지 매수

○ 지원대상자 :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

○ 지원규모 : 47억원

○ 지원조건 : 연리 1.5%

- 융자 한도,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

○ 융자대출업무 대행기관 : 산림조합중앙회

○ 융자신청서 접수기관 : 한국임업진흥원

2. 사업 대상자

○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(이하 “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”)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, 조림지 육림,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

3. 신청 자격 및 요건

○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, 육림,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

-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

○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,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(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)

○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

○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,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·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

○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으며,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

○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

○ 수급조절,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(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)이 행하는 사업

4. 세부사업별 융자조건

○사업별 융자조건

사업명구분		금리	지원율(%)		융자한도	융자기간(년) (거치/상환)	비고
			융자	자부담			
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	속성수 (열대지역)	1.5%	100	-	소요액	7/3	육림포함
	속성수 (기타지역)	1.5%	100	-	소요액	10/3	육림포함
	장기수 (열대지역)	1.5%	100	-	소요액	17/3	육림포함
	장기수 (기타지역)	1.5%	100	-	소요액	25/3	육림포함
	고무나무	1.5%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7/3	육림포함
바이오에너지조림	팜유나무	1.5%	60	40	사업비의 60% 이내	7/3	육림포함
	바이오매스조림(SRC)	1.5%	100	-	소요액	2/3	육림포함
임산물가공시설		1.5%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2/3	-
해외조림지 매수		1.5%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10/3	-

주1)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

주2) 팜유나무 지원조건 :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,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(위성영상 등) 제출

주3) 바이오매스조림(SRC)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(2 ~ 5년) 적용
SRC(Short Rotation Coppice) : 단벌기 맹아갱신

주4) 임산물가공시설 :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

주5) 해외조림지 매수 : 산업·탄소배출권·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,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

○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

- 조림 : 조림예정지정리, 묘목구입(또는 양묘비용), 식재, 비료구입 및 시비, 임도시설,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,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육림 : 보식, 풀베기, 가지치기, 간벌, 병해충 방제, 임도보수,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,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- 임산물가공시설 : 부지조성,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비용
- 해외조림지 매수
  ① 지원대상 : 산업·탄소배출권·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,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
  ② 지원방법 :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

○ 담보물 취득 :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
- 담보관련 문의 :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
- 전화번호 : 02-3434-7235(정책자금팀)

5. 융자사업자 의무

○ **(개발자원의 반입)**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해야 함(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)

○ **(융자금 집행)**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(50% 미만 대출도 포함)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(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)되며,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융자신청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종료일 전까지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

해야 함. 단,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

○ **(실적제출)**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6월 말 및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(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)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(前)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

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

6. 융자지원방법

○ 사전대출

- 사업비의 100% 사전대출 :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,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(SRC조림)
-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: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, 임산물가공시설

○ 사후대출

- 해외조림지 매수

*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과 사후대출의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

7.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

○ 융자신청 접수 기간 및 융자지원 사업비

- 접수기간 : 2019. 3. 11.(월) ~ 2019. 4. 5.(금)
- 지원계획 금액 : 47억원

* 정부예산, 융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** 융자심의회를 통한 지원액 결정 후 예산잔액 발생시 추가 모집 실시

○ 융자 신청 제출자료

-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(대출) 신청서(및 첨부서류)

○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(http://www.forest.go.kr)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(http://ofiis.kofpi.or.kr)를 참조

○ 접수기관 및 문의처 :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·글로벌사업본부

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(우편번호 07570)
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·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
- 전화번호 : 02-6393-2713

*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,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8.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

○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
- 제출된 신청 서류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

○ 선정절차

사업자모집 공고	⇒	신청서 접수, 평가	⇒	융자대상자 선정	⇒	융자약정체결 /지급
산림청		한국임업진흥원		산림청 융자심의회		융자대상자, 산림조합중앙회

* 융자 심의는 1차는 서류·면담심사, 2차는 최종 심사로 진행

- 1차 서류·면담 심사는 사업계획의 설명, 질의·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

**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(융자신청 철회) 확인

○ 융자 대상자 결정여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(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)

○ 융자금 지급방법 : 담보(국내 물건에 한함) 취득 후 일괄 지급

9. 기타사항

○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'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'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'여신규정'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

○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,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
-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○ 신청사업 경합 시에는 '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'에서 정한 사업종별 지원액 배분 기준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신청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

* (우선순위)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〉 바이오매스 조림 〉 고무나무 조림 〉 임산물가공시설 〉 해외조림지 매수 〉 팜유나무 조림

○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간 MOU가 체결되었거나, 체결을 공식적으로 협의 중인 국가에 대한 투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

○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(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·소반)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음

- 단,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부족액(인정가능 대상에 한함)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○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○ 융자대상자 결정 후,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

○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,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

○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센터로 하여금 융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

○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

○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

○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○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

붙임 1.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(대출)신청서 1부.
2. 소요자금 산출내역서(작성양식) 1부.
3. 융자 사업계획서(작성양식) 1부.
4. 융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1부. 끝.